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0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대상투자신탁 : BEST 신중 MMF S-7호 (법인가입용)

2. 변경 내용 : 보수인하 (총 0.24% → 0.17%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운용사보수	0.09%	0.05%
판매사보수	0.13%	0.10%
수탁사보수	0.02%	0.02%

3. 변경내용 대비표

변경 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 40 조 (투자신탁보수)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0.9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3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</p>	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u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0.5</u> <u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</u>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</p>

4. 변경 시행일 : 2005년 12월 13일

조흥투자신탁운용(주)